

## 학교 시설관리 및 건설 자문위원회 규정

제정 1996. 6. 20.

제4차 개정 2018. 7. 27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각종 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위치, 규모, 용도, 조경, 환경,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학교시설관리 및 건설자문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특별히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 (개정 2003.9.26)

1. 시설물의 신축, 증축, 개축 및 용도에 관한 사항
2. 시설의 합리적인 배치, 위치이동, 시설물의 사용제한에 관한사항
3. 전기, 통신, 급배수, 난방, 환경, 조경 기본시설에 관한 사항
4.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

**제4조(구성 및 임기)** ① 위원회는 부총장, 기획처장, 학생지원처장, 사무처장, 장애학생지원센터장 등 5명의 당연직과 총장이 위촉하는 5명 내외의 관련분야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 단, 사안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 (개정 2018.07.27.)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(개정 2018.07.27.)

**제5조(위원장)**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.

**제6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본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③ 위원회가 심의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사용할 부서장과 건축시설관리 담당부서의 직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**제7조(간사)** 본 위원회는 시설과에서 주관하며 본 위원회의 기록 및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둔다. (개정 2003.9.26)

**제8조(조사·연구의뢰)** 본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,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

있다.

**제9조(소위원회)** ① 학교시설관리 및 건설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계자문소위원회와 건축실행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설계자문소위원회와 건축실행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 시설관리 및 건설자문위원회에서 정한다.

(조 신설 2009.9.14)

**제10조(회의록)**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.

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,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인원 전원이 서명, 날인하여야 한다.

(조 변경 2009.9.14)

**부칙**

(1)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(2)(경과조치) 본 규정 시행전 학교시설물안전대책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본 규정 공포와 동시에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본다.

**부칙**

이 규정은 1997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81401-768, 2003.9.26)

이 규정은 2003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부-1036, 2009.9.14)

이 규정은 2009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부-393, 2018.07.27)

이 규정은 2018년 07월 27일부터 시행한다.